

現行 循環狩獵場 制度에 關한 研究¹

邊 雨 燦²

A Study on the Current Rotation System of Hunting Ground¹

Woo Hyuk Byun²

要 約

지난 4 년간에 걸쳐 循環狩獵場 運營狀況과 文獻調查 및 수렵인에 대한 設問調查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問題點 내지 特性을 도출하였다. 1) 狩獵人들은 現행의 순환수렵제도의 불편함과 과대한 利用費用의 완화를 바란다. 또 狩獵者는 年평균 2,000 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銃器所持者가 200,000 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렵여건이 좋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2) 狩獵人들의 狩獵과 野生鳥獸에 대한 知識水準이 매우 낮고, 狩獵倫理觀의 확립이 미약하다. 3) 狩獵講習會의 時間 配當이 너무 狩獵을 위한 獵師의 質質을 向上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4) 捕獲頭數에 비추어 본 野生鳥獸의 密度는 아직 適正棲息密度에 미달이라고 보여진다. 5) 狩獵活動에 의한 觀光經濟의 人 面의 기여는 아직 미약하다. 6) 野生動物의 實態調查와 狩獵에 關한 制度的, 法律的인 研究가 要望되며 수렵과 農·林業과의 利害를 調整하는 作業이 필요하다.

以上과 같은 問題점들을 해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수렵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제도를 提案하는 바이다.

1) 狩獵免許試驗制度의 新設

수렵인의 수렵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철저한 시험제도를 거쳐 선발함이 바람직하다.

2) Revier system(獵區制度)의 導入

본 제도의 근본개념은 야생동물의 狩獵權이 土地所有主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私的 所有概念으로부터 保護와 培殖에 강한 動機를 부여할 수 있다.

ABSTRACT

During the past 4 years, I have made a careful analysis of the present rotating system of hunting areas, on the one hand, by asking a group of hunters to fill out a questionnaire, and on the other hand, by referring to the written documents on the subject. And, as a result, it is concluded that this system, by varying the hunting grounds each year, contains in itself several problems as follows.

1. The hunters find it quite inconvenient to use a different hunting ground year after year and they also complain that the present hunting ground charge is more than it is worth.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hunters will explosively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betterment of hunting conditions.

¹ 接受 8 月 6 日 Received on August 6, 1986.

²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College of Agriculture, Korea Univ., Seoul, Korea.

2. The hunters have almost no information about game and they are, as a whole, lacking in the ethics of hunting.
3. The allotment of time in hunting training courses is not so sufficient that it is next to impossi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hunters.
4. As a rule, the population density of wildlife is so sparse that it falls short of the proper standard of it.
5. The present hunting system does not seem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ourism.
6.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make a general survey of the situation of wildlife for the legal protection of it. Besides, the interests of hunters are so closely tied up with those of farmers and foresters that drastic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ttle their conflicting difference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at the same time, of developing sound hunting practices in the long run, I hereby make two suggestions.

1. The Establishment of the Hunting License Test System

It is desirable to issue a license to a prospective hunter after he has met a special qualification and then passed a test so that he may have bits of information needed for his hunting activities.

2. The Introduction of The Revier System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is system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ivate landowner should reserve a right to the pursuit of gam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wildlife management.

Key words: rotation system; Hunting License System; Revier System; wildlife management

緒 論

狩獵行爲는 自然을 대상으로 하는 國民餘暇活動으로서 心身을 단련시키며 自然과의 접촉을 갈망하는 現代人에게 각광받는 「레저」活動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林業先進國에서는 狩獵團體가 차지하는 社會的 역할이 매우 크며, 특히 森林問題에 대해서는 중요한 社會壓力團體로 作用하고 있는데, 그 주요 기능으로서는 山林의 保存과 野生動物의 계획적인 管理와 資源化를 통하여 林業所得增進과 地域發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山林經營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野生動物은 森林의 주요 副産物으로써 엄연한 山林資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資源化시키지 못해 林業所得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¹⁾, 지난 10餘年前부터 自然保護運動과 같은 脈絡으로 野生動物의 保護·增殖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過去 無節制한 狩獵과 密獵 등으로 一部 鳥獸類는 滅種危機까지 達하게 되어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年間 제주도 常設狩獵場을 제외한 全國 一圓에 대하여 禁獵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措置에 의하여 그동안 野生鳥獸의 棲息密度가

현저하게 增加하였고 건전한 수렵의 育成과 外國관광객의 유치효과 등을 감안하여 1982년부터 江原道를 시작으로 매년 1個道씩 循環式으로 有料狩獵場을 開設하고 있다.

지난 4年間の 道別 循環狩獵場 運營過程에서 많은 問題點이 露程되고 있지만 制度의인 狩獵場 運營에 대한 歷史的인 경험부족과 基礎資料의 빈곤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方向設定에 큰 隘路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공기총의 대량 보급으로 狩獵人口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렵활동의 증대는 야생조수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自然生態系의 安定을 위태롭게 하게 되므로 항상 「利用」과 「保護」의 相反性을 調和시키려는 措置가 필요하게 된다. 狩獵을 管掌하는 山林廳에서는 야생조수의 增殖을 위해서 가급적 점진적으로 수렵장을 확대해 가려는 立場이지만 獵士들의 要求 및 外國觀光客의 유치효과 등 觀光經濟的인 觀點은 급진적인 開放을 要求하므로 利害相衝의 調整이 艱難한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利用」과 「保存」의 調和問題를 건전한 狩獵의 育成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고, 또 野生動物의 資源化를 통한 林業所得 增進에 기여할 수 있는 狩獵制度의 發展方向을 제시함에 목적을 둔다.

材料 및 方法

1. 研究方法

狩獵學(Jagdkunde)의 研究領域은 社會的인 面, 生態的인 面, 經濟的인 面으로 分類될 수 있다.⁸⁾ 生態的인 接近은 狩獵客體, 즉 對象物인 野生動物의 保護·增殖 등에 관한 研究를 말하며, 社會的인 接近이란 狩獵의 主體가 되는 人間에 關係되는 사항으로서 狩獵法規, 貫習, 倫理, 獵士들의 行爲와 意識 등에 관한 研究를 말한다.

本 研究의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세 가지 側面에서 Interdisciplinary의 研究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주로 社會的인 面에 局限시켜서 接近코자 한다. 우선 지난 4年 동안 施行된 循環狩獵場 運營結果를 各道에서 蒐集하여 수렵인에 대한 一般의 事項을 分析하였고 狩獵費用이나 捕獲數量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狩獵人들의 行爲나 態度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設問調查를 행하였다.

設問調查는 免許證을 발급받기 위해 全國各地의 狩獵講習會에서 教育을 마친 직후의 受講生을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된 設문지로 集合調查를 하였다. 設問調查 對象者는 總 246名이고, 調査場所에 따른 調査者數와 日字는 서울 47명(1985년 10월 22일), 경기 46명(10월 29일), 인천 63명(10월 22일), 대구

41명(10월 29일), 경남 24명(10월 29일), 전남 25명(10월 18일)이다.

設問書의 主要內容은,

1. 狩獵活動에 관한 事項
2. 鳥獸識別 能力에 관한 事項
3. 法規 및 自然保護에 관한 理解度
4. 狩獵便益에 관한 事項
5. 狩獵者에 관한 一般事項 등이다.

設문 조사자 중에는 과거 수렵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混合되어 있으므로, 問項에 따라서 全體合算한 백분율의 意味가 희박할 때는 cross table을 作成하여 集團別로 區分하여 分析하였다.

結 果

1. 循環狩獵場 運營狀況分析

(1) 利用客 數

지난 4年間的 道別 循環狩獵場 利用客 數는 <表 1>과 같다. '82年度 江原道の 994名에서 '83年 慶南에서는 1,919名으로 현저하게 增加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忠北, 全南에서는 2,145명, 2,173명으로 미세하나마 계속적인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82年度 江原道の 利用客 數가 과도하게 작았던 理由로서는, 10년 간의 禁獵措置 이후 처음으로 實施 되므로서 獵士들의 準備不足과 有料狩獵에 상응한 풍

<表 1> 道別 入獵者 構成

年度		江原('82)	慶南('83)	忠北('84)	全南('85)
市·道					
	서울	529 (53.2)	506 (26.3)	931 (43.4)	729 (33.5)
	부산	-	226 (11.8)	42 (2.0)	122 (5.6)
	대구	5 (0.5)	201 (10.5)	134 (6.2)	141 (6.2)
	인천	43 (4.3)	44 (2.3)	67 (3.1)	30 (1.4)
	경기	74 (7.5)	99 (5.2)	207 (9.7)	192 (8.8)
	강원	272 (27.4)	58 (3.0)	133 (6.2)	31 (1.4)
	충북	2 (0.2)	24 (1.3)	292 (13.6)	45 (2.1)
	충남	13 (1.3)	32 (1.7)	142 (6.6)	109 (5.0)
	전북	2 (0.2)	25 (1.3)	22 (1.0)	33 (1.5)
	전남	3 (0.3)	33 (1.7)	18 (0.8)	553 (25.5)
	경북	6 (0.6)	57 (3.0)	65 (3.0)	45 (2.1)
	경남	1 (0.1)	516 (26.8)	37 (1.7)	124 (5.7)
	제주	-	-	1 (0.0)	-
외국인	일본	42 (4.2)	62 (3.2)	39 (1.8)	
	미국	2 (0.2)	8 (0.4)	15 (0.7)	
	기타	-	28 (1.5)	-	
	소계	44 (4.4)	98 (5.1)	54 (2.5)	19 (0.9)
총계		994 (100.0)	1,919 (100.0)	2,145 (100.0)	2,173 (100.0)

() 안은 構成比 %

부한 捕獲 가능성에 대한 罽려 등의 要因이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매년 狩獵에 참가하는 총 인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시되는 지역에 따라서 利用者들의 道別構成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暗示하고 있다. 江原道民의 경우는, '82년 강원도에서 수렵이 개최되었을 때는 272명에서 그 다음해부터는, 58, 133, 31명으로 그 數가 격감하고 있으며, 全南道民의 경우에도 他道에서 實施될 때는 3, 33, 15명에 不過하던 것이 '85年 當該道에서 실시되었을 때는 553명으로 수십배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開催地가 멀어짐에 따라 參加者數가 相對的으로 작아지며, 그 反對의 경우도 成立되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은 慶南, 忠北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交通距離에 따른 時間과 經費增加에 起因된다고 볼 수 있으며, 獵士들의 立場에서 볼 때 狩獵場의 擴大普及에 대한 要望은 당연한 歸結로 볼 수 있다.

지난 4年間の 入獵者數는 年間 2,000餘名에 달할 뿐이었지만 銃器所持 現況을(獵銃 21,397名과 空氣銃 186,878名)¹⁾ 고려할 때 狩獵與件의 變更如何에 따라서 暴發的인 增加를 보일 潛在性이 있다고 판단된다.

外國人 狩獵客은 주로 日本人이며, 총 입렵자 중에서 外國人이 차지하는 비율은 江原, 慶南에서는 각각 4.4%, 5.1%였으나 忠北, 全南에서는 2.5%, 0.9%로서 數가 점차 줄어 들고 있으며 또 그들은 대부분 短期入獵이어서 外國 狩獵觀光客 유치목표에는 전혀 기여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韓國獵道協會의 見解는 “外國狩獵觀光客은 獵場까지 거리가 멀고, 交通, 宿泊, 慰樂施設의 利用 등이 不便하고, 또한 한정된 지역에서의 수렵 활동에 제약을 느낀 나머지 한번 왔던 사람들은 再入國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²⁾

(2) 性別·年齡別 構成

狩獵人口의 性別·年齡別 構成比를 慶南과 忠北에서 실시된 入獵承認 發給臺帳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表 2>와 같다.

狩獵人的 性別構成은 전부 男性이며, 가장 많은 年齡層은 40代와 50代로서 全體의 약 60%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60代, 30代, 20代 順으로 되어 있음은 兩地域 모두 같다.

<表 2> 年齡別 構成

年度 齡級	'83 慶南		'84 忠北	
	頻度數	%	頻度數	%
20~29才	8	0.8	24	1.5
30~39才	91	9.0	199	12.8
40~49才	341	33.8	509	32.7
50~59才	315	31.3	473	30.4
60才以上	253	25.1	352	22.6
計	1,008	100.0	1,557	100.0

다른 스포츠에 비해 長年層, 老年層의 構成比率이 매우 높는데 그 理由로서는 銃器購入이나 狩獵活動에 많은 費用이 소요되어 經濟的 基盤이 갖추어진 年齡層이 많으리라는 점과, 최근 10餘年의 禁獵期間 동안에 새로운 狩獵人口層의 形成이 중단되어 상대적으로 高齡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狩獵이 점차 보급되면, 특히 空氣銃의 대량 보급으로 인하여 20代와 30代의 比率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극히 端的인 예이지만 <表 2>에서 '83年度에 비해 '84年度에 와서는 20代와 30代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狩獵鳥獸 捕獲狀況

<表 3>은 獵期中 申告된 捕獲鳥獸量을 集計한 것이다. 總捕獲個體數는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는 鳥類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種類別 捕獲數量은 地域에 따라 크게 相異한데, 멧돼지는 內陸地方인 江原, 忠北에서 월등히 많이 捕獲되었으며, 반대로 숫꿩, 오리류, 멧비둘기, 고라니 등은 氣候와 地形條件 등의 棲息環境이 有利한 全南, 慶南 地方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捕獲되었다.

上記의 申告된 捕獲數量에 대한 信憑性에 대해서는 捕獲料 徵收에 의한 申告忌避, 申告體系의 不便, 團束公務員 不足 등의 理由로 不正確性이 指摘되고 있

<表 3> 狩獵鳥獸 捕獲狀況 (마리)

道別	'82	'83	'84	'85
鳥獸別	江原	慶南	忠北	全南
멧돼지	127	31	101	22
고라니	39	47	43	203
멧토끼	17	198	80	734
숫꿩	505	2,714	5,483	5,581
멧비둘기	11	1,135	491	3,173
까마귀	-	480	183	174
오리류	14	678	137	3,336
計	713	5,283	6,518	13,223

¹⁾ 1985년 9월 현재.

다.^{4),5),6)} 捕獲料 徵收를 廢止한 '85 年 全南의 경우는 申告數量의 正確性에 대해서 높은 蓋然性을 가질 수 있다.

申告된 捕獲數量을 參加者數로 나누어 1 人當 捕獲數量을 계산하여 보면, '82 年을 基點으로 0.7, 2.8, 3.0, 6.1 마리로 증가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數字에는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1 人當 平均 納入經費가 30 萬원을 상회하므로서 매우 비싼 스포츠를 한다고 할 수 있다.

2. 設問調查 結果分析

(1) 狩獵人的 社會階層別 構成

① 年齡構造

狩獵講習會에 參加한 가장 많은 年齡層은 40 代 (36.5%)이며, 그 다음이 30 代(33.2%), 50 代 (21.8%), 60 代 이상(5.7%) 그리고 20 代 (2.8%)의 順이다. '83 年 경남과 '84 年 충북에서 실제로 入獵한 대상의 연령구조는 40 代→50 代→30 代의 順序였지만 여기서는 50 代와 30 代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이것은 젊은 層의 참여가 많아졌다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더욱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料된다.

(2) 教育水準과 財産程度

교육정도는 高卒(50.3%), 大卒(34.5%) 中卒이하(10.8%), 大學院卒(4.4%) 順으로 매우 높은 學歷水準을 보였다.

재산정도는 5 천만원 미만(38.2%)와 5 천만~1 억 사이(38.2%)가 가장 많았고, 1 억~2 억 사이 (14.2%), 2 억~5 억(6.8%), 5 억 이상(2.6%) 順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수준을 갖는 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月收入 程度도 재산정도에 거의 일치하는 果를 나타내었다. 즉 50~100 만원(38.8%), 50 만원 미만(33.2%), 100~150 만원(15.8%), 150~200 만원(8.2%), 200~300 만원(3%), 3 백만원 이상(1%)이다.

(3) 鳥獸識別能力과 法規

狩獵人的 鳥獸에 대한 識別能力과 免許發給을 위해 實施되는 4 時間에 걸친 狩獵講習會의 成果를 分析하기 위해 狩獵이 許用되는 獸類와 鳥類의 특징과 식별에 關하여 設問하였다(問項 1~5 參照).

鴛의 鳥상 구별(問 1)에 대해서는 正답자가 약 90%에 달하여 높은 편이나, 노루와 고라니의 區別(問 2)에 대해서는 56.5%의 正답자를 내어 매우 낮은 식별수준을 보여 주었다. 또 포획 가능한 獸類로 구

성된 項을 고르는 問 3에서도 正답자는 겨우 68.6%에 달할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렵이 허용되는 獸類가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의 셋뿐인데 이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獵師들의 資質에 큰 問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4〉 鳥獸識別

問 1. 鴛의 암수를 비교할 때 鴛의 특징은?	
(1) 몸이 작다	
(2) 갈색이다	
③ 목에 흰머가 있다 217, 89.9%	
(4) 꼬리가 짧다	
問 2. 노루와 고라니를 비교할 때 고라니의 특징은?	
(1) 숫놈은 뿔이 있다	
(2) 몸이 크다	
③ 엉덩이에 백색 반점이 없다 177, 56.5%	
(4) 털이 부드럽다	
問 3. 다음 수류 중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만 된 것은?	
(1) 노루, 멧돼지, 멧토끼	
(2) 산양, 멧돼지, 멧토끼	
③ 고라니, 멧토끼, 멧돼지 207, 68.6%	
(4) 멧토끼, 멧돼지, 늑대	
問 4. 다음 조류 중 포획이 가능한 것은?	
(1) 고니	
(2) 기러기	
(3) 흑비둘기	
④ 청둥오리 191, 58.1%	
問 5. 다음 조수 중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멧비둘기 187	갈까마귀 144
빼까마귀 138	쇠오리 73
청둥오리 169	홍머리 오리 24
청머리 오리 46	검둥오리 65
검둥오리 사촌 27	고방오리 16
흰뺨 검둥오리 29	검은머리 흰족지 8
맹기 흰족지 8	흰족지 3
넓적부리 16	바다오리 62
바다鴛 36	

○는 正답이며, 숫자는 빈도수와 正답비율임.

鳥類의 識別能力은 더욱 不足하여 問 4의 경우 58%에 不過하고, 狩獵可能鳥類 17 種에 대한 식별능력 을 묻은 問 5에 대한 結果는 수렵강습회 내지 면허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示唆하고 있다. 즉, 246 명의 設문자 중에서 멧비둘기(187명)와 청둥오리(169명), 갈까마귀(144명), 빼까마귀(138명) 정도는 50% 이상 알고 있으나 약간 회귀한 편인 바다鴛(36명), 검둥오리 사촌(27명), 고방오리(16명), 그리고 나아가 흰족지類에 關해서는 아는 이가 全無

한 상태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상의 鳥類는 우리 나라에서 棲息하는 371種 中 狩獵가능한 22種에서 17種을 발체한 것이다. 許容되는 鳥獸類를 식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狩獵에 임할 수 있겠는가? 또 狩獵現場에서는 動物들이 움직이고 視野가 좋지 못해서 잘 認知하고 있는 動物이라도 誤判하는 경우가 許多한데, 設問紙 上에서 이러한 정도의 정답자 뿐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講習會를 마친 직후에 나온 結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 하겠다.

鳥獸識別能力을 직업별, 연령별, 학력별 등으로 cross-check 하였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으 野生鳥獸에 대한 教育을 받을 곳이 전혀 없는 우리의 現實을 反映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表 5>는 禁止鳥獸 捕獲經驗 如否와 그 理由를 묻는 問項이다. 금지조수를 포획한 有經驗자가 응답자의 23.4%나 되며 그중 “모르겠다”를 대답한 6.4%는 포획이 가능한지 아닌지 조차 혼동되는 상태에 있는 계층들이라 볼 수 있다.

<表 5> 不法捕獲經驗

問 6-1. 狩獵금지 조수를 포획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3.4%
(2) 없다	70.2%
(3) 모르겠다	6.4%
問 6-2. 만약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별능력이 부족해서	35.8%
(2) 당황해서	3.2%
(3) 무엇인가 더 잡고 싶어서	25.3%
(4) 법규를 잘 몰라서	35.8%
問 7. 만약 포획량을 전부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1) 신고 장소가 너무 멀어서	43.5%
(2) 귀찮아서	29.9%
(3) 제한 포획량을 초과해서	22.7%
(4) 포획료 때문에	3.9%

금지조수를 포획한 이유에 대해서는(問 6-2) “식별능력 부족”과 “법규를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이유이며 “무엇인가 더 잡고 싶어서”에도 25.3%의 상당한 계층이 있다.

포획량을 전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어느나를 묻는 問 7에서 신고장소가 멀어서 또는 귀찮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一部는 포획료 지불이 아깝거나 제한 포획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本 문항에 응답한 數가 전체의 半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즉 未申告量이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던 수

렵장 운영결과의 보고서와 일치하고 있다.

(4) 狩獵政策에 대한 見解

(1) 現行狩獵制度

現行 循環式狩獵制度에 대한 意見を 묻은 問 8에서, 전체의 약 80%가 現制度에 만족치 못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狩獵機會가 주어지는 道別·郡單位 狩獵장에 가장 높은 희망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交通問題와 時間, 費用 등의 要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現行 狩獵免許發給制度에 대한 意見(問 9)에서도 절대多數가 完化해야 한다고 하며, 現制度에 만족하거나 더욱 強化시켜야 하는 層은 少數에 不過하다. 狩獵手續節次를 살펴보면 銃砲所持許可와 狩獵講習會履修證 그리고 銃器假領置 警察署에서 銃器引受, 狩獵장 도착신고 및 入獵承認을 위한 수수료 납부 등의 手續·節次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할 수 있겠다.

<表 6> 政策에 대한 見解

問 8. 現行 순환식 狩獵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 현재도가 좋다	10.9%
(2) 1년에 2개도씩 실시해야 한다	31.8%
(3) 1년에 4개도씩 실시해야 한다	12.8%
(4) 각 도별 군단의 순환식으로 해야 한다	44.5%
問 9. 귀하의 現行 狩獵권허발급 制度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現行 制度가 좋다	21.7%
(2) 강화해야 한다	8.0%
(3) 完化해야 한다	65.9%
(4) 모르겠다	4.4%
問 10. 狩獵장 사용료 수익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야생조수 보호 및 증식사업	69.9%
(2) 산림소유자에게 배분	2.3%
(3)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으로 활용	21.0%
(4) 임업 진흥기금에 투자	6.8%

狩獵場運營 收入金の 活用方案에 대한 設問에 대하여(問 10) 野生鳥獸保護 및 增殖(69.9%)에 가장 높은 支持를 보냈고 그 다음이 農作物 被害補償基金(21%)으로, 林業振興基金에의 投資와 山主에게 配分하는 案에 대하여는 6.8%와 2.9%로써 매우 낮은 찬동을 보이고 있다.

많은 野生動物이 森林속에서 생활하며 森林이 茂盛해지면 棲息環境이 改善되어 더 높은 密度를 갖게 되는 것은 常識의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林業投資에 낮은 支持를 보이는 것은 山林의 機能에 대한 認識不足에서 유래된 것으로 思料된다.

考 察

앞 장에서 지적된 현행 순환수렵장 운영에서 생긴 문제점을 範疇化 시키기 위해서, 또 狩獵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利害集團 相互間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수렵행위의 主體인 수렵동호인과 客體인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現地民, 林業, 觀光經濟로 분류하여 問題點과 相互關係를 分析키로 한다.

1. 狩獵同好人

현행 道別 순환식 수렵제도에 의해 遠距離 出獵에 대한 負擔을 감수하거나 出獵을 포기해야 하는 隘路를 갖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당일 출렵이 가능하도록 1일 수렵권으로 수렵해제지역을 과감히 확장하는 것을 要望하고 있다. 또 복잡한 入獵節次와 多岐한 入獵料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비해 많은 狩獵인이 狩獵과 野生動物에 대한 基礎知識조차 극히 미약하고 狩獵倫理와 精神이 缺如되어 있어 不法捕獲도 흔히 자행될 수 있는 段階라 보여진다. 이러한 낮은 狩獵技術水準과 倫理觀은 과거 수십년동안 내려온 잘못된 狩獵貴習의 影響이 크게 작용한 듯 하다. 즉 과거의 수렵자적에 대한 基準未備와 수렵에 대한 規制의 빈곤, 수렵에 대한 價値認識의 相異 및 教育不足 등의 要因이 작용하여 나쁜 慣性이 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狩獵免許를 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狩獵講習會를 履修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시간의 講義만으로 構成된 教育은 狩獵인의 資質을 향상시키기에는 극히 부족하며 形式에 불과한 조치라 하겠다.

狩獵制度가 발달한 독일에서는 수렵면허를 받기 위해서 엄격한 試驗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Bremen州와 Hessem州 등에서는 시험자격으로 1년간의 교육 또는 120時間의 理論과 實技教育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⁹⁾ 시험과목은 모든 州에서 같으며 筆記試驗과 口述試驗 그리고 射擊試驗 및 現場 實技試驗의 4段階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¹¹⁾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주요 내용은 ①自然保護와 野生動物保育 ②野生動物學 ③動物病理學 ④銃器에 관한 사항 ⑤狩獵法規 등이다.

당년에 全科目이 合格하는 數는 극히 적으며 평균하여 매년 30~50% 정도가 탈락된다.⁹⁾ 在學中에 수렵에 관계되는 科目 11學點을 履修한 林科大學生의 경우에도 30~50%가 탈락될 정도로 엄격한 선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충분한 교육과 엄격한 선발 과정은 수렵인 자신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捕獲者가 아닌 調節者로서의 역할에 대해 自負心을 갖게 되며, 이러한 能力은 專門家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스스로 自遵心 있는 행동을 하도록 制御되어 건전한 수렵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2. 野生動物

지난 10餘年間的 禁獵措置 이후 棲息密度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適正棲息密度에 어느정도 접근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野生鳥獸의 實態調査는 林業試驗場 주관으로 各道 林業試驗場이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人力으로 廣域의 地域을 對象으로 하고 있어, 調査한다 하더라도 實用性 있는 자료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捕獲計劃은 一定規模의 獵區別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調査 역시 獵區單位로 수행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는 기존의 개략적인 정보를 토대로 전국 一圓을 여러 獵區로 區劃한 후 獵區別로 調査와 管理體系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야생동물이라는 財產物에 대한 狩獵權의 所在 定立에 관한 것과, 野生動物의 保護主體와 利用主體가 二元化되어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古來로부터 야생동물은 잡는 자가 임자인 것이 實行이었지만 所有主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林產物의 利用이 無主公山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開放되었지만 所有主는 엄연히 國家였던 것과 같이 狩獵權은 비록 個人에게 주어졌지만 所有權은 國家에 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私有財產 중심의 經濟體制 속에서 앞으로는 國家가 野生動物을 효과적으로 保護 管理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한 獨逸의 例를 들면, 君主에게 소속되었던 野生動物의 財產權이 1848年 革命을 계기로 土地所有主에게 移管되어 현재까지 狩獵權(Jagdrecht)은 土地所有主에게 있다.²⁾ 이러한 野生動物에 대한 所有概念³⁾은 資源增殖 지향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여 엄

²⁾ 原來的인 뜻의 狩獵權(Jagdrecht)은 土地所有主에게 있지만, 작은 면적의 토지에서는 수렵실행이 사실상 不可能하므로 狩獵實行權(Jagdausübungsrecht)은 최소면적 75 ha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³⁾ 野生動物은 移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자가 없는(Herrenlos) 것이지만 자기소유 토지내에 있는 것은 捕獲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所有를 말한다.

정난 密度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나라 남북한 합친 정도의 면적을 갖는 독일 전역에서 '84年 1년동안 포획된 들은 사슴類 41,707마리, 노루 678,295, 멧돼지 69,155, 산양類 4,642, 멧토끼 681,950, 들토끼 615,456, 꿩 371,251, 오리類 516,360 마리 등으로¹⁰⁾ 우리 나라의 포획량과 비교할 때는 수백배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量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野生鳥獸의 保護主體는 정부가 자연보호 次元에서 担當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의 利用主體는 수렵인이나 獵獵꾼과 같은 利益集團이다. 利用과 管理의 主體가 二元化된 상황아래서 均衡狀態의 維持나 增殖에 대한 強한 動機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現地民과 林業

野生動物은 山林속에서 生活하며 山林을 廣意로 해석할 때는 그 구성요소로서 엄연한 林業副産物이지만 야생동물의 증식이나 수렵활동이 林業所得에 기여한 것은 전혀 없다. 현행의 Lizenz system⁴⁾의 인 수렵제도 下에서는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資源化는 오히려 山林被害를 야기시켜 林業部門에 支出만 증대시킬 것이다.

또 農業의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農作物被害에 대한 補償은 누가 担當하겠으며, 獵師들과 住民과의 접촉에서 그들의 觀樂의인 生活態度는 주민에게 퇴폐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서 이른바 社會的 環境汚染을 일으킬 염려가 다분히 있다.

野生動物의 增殖 根據地는 山林과 農地 등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농민에게는 利得이 全無할 뿐이며 오히려 損害 내지 不便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正當하지 못하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목적이라는 구실로 不法捕獲이 盛行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觀光經濟

'82년 강원도 수렵에서의 入獵料 등의 粗收入은, 3.2 억원이며 그 다음해부터는 5.9억, 6.9억, 6.8 억원³⁾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收入은 아니다.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수는 점차 줄어들어 '85 全南수렵에서는 19명에 不過하여 수렵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狩獵을 통한 價値創出을 獨逸의 例를 들어 설명하면, 1974年 1年間 捕獲된 野生鳥獸를 金額으로 환산하면 약 1.2억 DM(500억원 정도)에 달하며 그외에도 면허세, 保險料, 獵獵賃貸費, 狩獵稅, 銃器 등 狩獵을 통해 創出되는 費用이 4.3억 DM(약 2,000억원)에 달하여¹⁰⁾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 나라에서도 20만명 이상의 수렵저변층이 확대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狩獵興件의 변동여하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수렵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야생조수의 밀도 증식이 수반된다면 海外觀光客의 유치에도 전강이 좋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렵의 관광경제적인 비중은 매우 높아지리라 본다.

結論 및 改善方案

1) 狩獵免許試驗制度의 新設

현재는 수렵감승회의 履修證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으나, 수렵인의 수렵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철저한 시험제도를 거쳐 선별함이 마땅하며 본 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狩獵行爲는 銃器를 다루기 때문에 安全事故의 위험이 自身 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許多하며, 또 상처만 입고 도망친 野生動物의 처참한 末路에 대한 人道의인 立場을 고려하여 能熟한 射擊術이 요구된다. 또 이러한 射擊術의 對國民普及은 長期的인 國防戰略이기도 하다. ② 野生動物의 識別도 제대로 못하는 段階에서는 捕獲制限에 대한 法規는 無意味하다. ③ 충분한 지식을 갖춘 者만이 단순 捕獲者가 아닌 調節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進전한 狩獵倫理觀의 定着을 기대할 수 있다. ④ 狩獵同好人이 專門家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높은 矜持로써 社會教育을 先導해 나갈 수 있다.

2) Revier System(獵區制度)의 導入

Revier System이란 독일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全國을 一定크기(보통 洞 또는 面單位)로 區劃하고, 單位別 즉 獵區別로 管理하는 제도이다. 각 獵區의 所有主는 獵區內에 위치한 土地의 所有者로 構成되

⁴⁾ Lizenz system이란 수렵면허를 발급받은 者에게는 一定期間, 一定區域에서는 自己의 土地所有에 관계없이 狩獵權이 주어지는 制度를 말한다.

며 그들의 聯合體가 대표를 선출하여 직접 獵場을 경영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임대시키고 임대료는 所有面積別로 分配하여도 된다. 獵區所有者 또는 위임받은 管理者는 獵區內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넓은 河岸이나 海邊에서는 獵區主가 없는 共同獵場으로 채용하는 Lizenz-system을 병용할 수도 있다. 이 制度를 쉽게 理解하도록 자동차에 比喻한다면,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려면 자기 所有의 자동차를 사거나 임대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原理이다. 本 制度의 根本概念은 野生動物의 狩獵權이 土地所有者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根據하며, 私의 所有概念으로부터 保護와 增殖에 강한 動機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本 制度를 채용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長點으로서, ① 保護와 利用主體가 二元化되어 있어 野生鳥獸의 增殖이 어려운 立場을 一元化시킴으로써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野生動物의 增殖을 도모할 수 있다. ② 林業이나 農業을 영위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所得이 생기고, 만약 農作物의 被害가 발생했을 때는 獵區管理者로부터 補償을 받을 수 있다. ③ 獵師들은 자기가 願하는 地域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獵場을 임대하거나 會員으로 가입하므로써 계속적인 狩獵활동을 할 수 있다. ④ 政府는 獵場賃貸에 대한 狩獵稅를 징수하여 財政收入을 올릴 수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을 할 수 있다. ⑤ 政府는 獵場賃貸에 대한 狩獵稅를 징수하여 財政收入을 올릴 수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 증식에 대한 支出을 줄일 수 있다. ⑥ 固定獵區가 설치되므로 外來觀光客에 대한 서어비스 시설의 설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外國狩獵人의 유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現地民의 所得增大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Revier System은 현재와 같이 野生動物 棲息

密度가 낮은 상황에서는 一時에 全國적으로 보급할 수 없으며 段階的인 示範을 거쳐서 擴散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생동물관리(Wildlife management)는 林業에서 더욱 重要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¹⁴⁾ 라고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羅曙俊·金泰旭, 1984. 先進外國과 우리 나라의 山林保護 制度比較 研究, 材政研究報告書, 山林廳, pp. 154.
2. 한국엽도협회, 1985. 건의서.
3. 野生鳥獸資料集, 1986. 山林廳, pp. 37-45.
4. 강원도 수렵장 관리운영상황, 1983.
5. 경남, 1984. 수렵장 관리운영상황.
6. 충북, 1985.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결산보고.
7. 전북, 1986. 순환수렵장 운영.
8. Enderes, J. 1985 Wildbiologie. Fachschaftsrat der forstli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Göttingen. p. 4.
9. Deutscher Jagdschutz-Verband, 1986. DJV Handbuch. Jagd. pp. 91-92.
10. Land-und Hauswirtschaftlichen Auswertungs- und Informationsdienst, 1976. Wald, Forst-und Holtwirtschaft, Jagd. p. 160.
11. Krebs, H. 1976. Vor und nach der Jagerprüfung, BLV Jagdbuch, p. 355,
12. Budig, G. 1965. Die europäischen Jagdsysteme, und ihre wirtschaftliche Bedeutung. Dissertation. pp. 17-20.
13. Bundesjagdgesetz. 3.
14. Meyer, H. A. 1952. Fire Management. John Wiley & Sons, p. 196.